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10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편성권자 변경(도지사 → 소방서장, 군수)에 따라 자녀장학금 예산 편성자틀 이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장학금 예산편성권자 조정(제7조)
 - 현행 도예산에서 편성 → 임용권자 소속기관(도, 군)에서 편성
-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정(제10조)
 - 현행 도에 설치 → 임용권자 소속기관(도, 군)에 설치

5. 검토의견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와 관련한
예산편성권자가 소방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녀장학금의 예산편성권자도 이와 같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에 관련하여 도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을 임용소속 기관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문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